

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목 적

이 장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·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,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며, 양자간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8.1 조 적용범위

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

제 8.2 조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

제1.2조(다른 협정과의 관계)에 더하여,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.

제 8.3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.

2.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, 인간·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, 위생 및

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,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, 양자간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,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, 위원회는

- 가.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.
- 나.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.
- 다.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.
- 라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, 국제식품규격위원회, 세계동물보건기구,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,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·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문제·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협의한다.
- 마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·이행 및 적용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의 조정을 원활히 한다.
- 바. 각 당사국의 규제의 틀과 규범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,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문제에 관련된 양자적 이해를 증진한다. 그리고
- 사. 동물건강, 식물건강과 육류, 가금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 기술협의를 위한 진전사항을 포함하여, 그러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진전사항을 검토한다.

4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
5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.

6.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·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. 그러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기관 및 부처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규정된다.

제 8.4 조 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.